즉시접수	당일접
	ic.or krif
제출자	ww.klo
총	건

임차권설정등기신청

접	년	월	일	처	접 수	기 입	교 합	각종통지
수	제		ই	리인				

부동산의 포

트리이시키 - 사이시					
등기원인과 그 연월일	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				
등 기 의 목 적	임차권설정				
임 차 보 증 금	금 원				
차 임	금 원				
차임지급 시기					
존 속 기 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
구분 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 주 소 (소 재 지)				
등 기의 무 자 등 기권 리					



등 록 면 허	세	금				원
지 방 교 육	세	금				원
농 어 촌 특 별	세	금				원
세 액 합	계	금				원
		금				원
등 기 신 청 수 수	료	납부번호	:			
		일괄납부	•	건		원
	등	기의무자의	등기필기	정보		
부동산고유번호						
성명(명칭)		일런	번호		비밀	l 번호
	l Ž] 부	서	면		
·임차권설정계약서		통	• 인감	증명서 [또는 본인서] 명사실
·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/	ત્ર ને	。 통	확인			통
·등기신청수수료 영수			(기 E			O
·도면	근역 년	·	() 0	1 /		
·등기필증		。 통				
·위임장		통				
·쥐 급경 ·주민등록표등(초)본		통				
·무인궁극효궁(소)관		<u> </u>				
		년	월	일		
위 신청인				<u>(a)</u>	(저희. •)
T 건경인				(<u>)</u>	(전화 : (전화 :)
					(यमः)
(또는)위 대리	인				(전화:)
지방박	법원				귀중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


임차권설정등기신청

접	년	월 일	처	접수	기 입	교 합	각종통지
수	제	호	- 리 인				

① 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

서욱특변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변아파트 가동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벽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각 10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묵의 번호 1-101

구 조 청근콘크니트조

면 적 1층 101호 86.03㎡

이

② 등	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3년 5월 19	익 인차권석정계약			
3 등	등 기 의 목 적	입차권석정				
4 6	l 차 보 증 금	급 50,000,000 원				
⑤ え	}- 임	급 500,000 원				
⑥ え	- 임지급 시기	매월많인				
⑦ ₹	은 속 기 간	2013년 5월 1억-	부터 2015년 4월 30익까지	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 소(소재지)			
※ 등기의무자	이 대 백	XXXXXX-XXXXXXX	서욱특벽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긱 20 (서초동)			
⑨ 등 기권리자	긴 강 동	XXXXXX-XXXXXXX	서욱특병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긴 10, 가동 101호(서초동, 샛병 아파트)			



10 등 록 면 허 서	1	금		$\overline{}$	00,000	원
10 지 방 교 육 서	1	금		\bigcirc	00,000	원
10 농 어 촌 특 별 서	1	금		\circ	00,000	원
① 세 액 합 7	1	금		\bigcirc	00,000	원
		금			15,000	원
12 등 기 신 청 수 수 5	コ エ	납부번호	<u>5</u> :00-	-00-(00000	00-0
		일괄납부	<u>:</u>	건		원
	13	등기의무지	의 등기필	정보		
부동산고유번호			1102-	2006-00	02095	
성명(명칭)		일련	번호		비밀변	<u></u> 호
이대백		Q77C-L0	07I-35J5		40-46	536
	14)	첨 투	나 서	면	1	
이 키 기 서 기 게 아기		1 E	.이가주ㅁ	네서 또	는 본인서명/	나신
·임차권설정계약서	. 1	_		0/1 1	L LUMO	
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/	•	_	확인서			1통
등기신청수수료 영수된	발확인		〈기타	>		
·도면		1통				
·등기필증		1통				
위임장		통				
·주민등록표등(초)본		1통				
	2	013년	5월 19) {		
⑤ 위 신청인	0	(। ल्स	<u>(1)</u>	(전화 : 200-7	766)
	7	•		_	(전화: 211-7	
		·	-		_ ,	•
(또는)위 대리	인				(전화:)
서울중앙 지병	방법원				등기국 귀중	

삭1행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


등기신청안내서 - 임차권설정등기신청

■ 임차권설정등기란

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,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① 공동신청

임차권자(등기권리자)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(등기의무자)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② 단독신청
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,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
⑦ 1동의 건물의 표시

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, 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, 도로명주소(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를 기재합니다.

(i)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

건물의 번호, 구조, 면적만을 기재합니다.

ⓒ 대지권의 표시

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,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"임차권설정계약" 으로, 연월일은 임차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. (예) ○년 ○월 ○일 임차권설정계약

③ 등기의 목적란

"임차권설정" 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④ 임차보증금란

이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"금○○○ 원"으로 기재합니다.

⑤ 차임란

아라비아 숫자로 "금○○○원"으로 기재합니다.

⑥ 차임지급시기란

"매월 말일" 등과 같이 약정한 시기를 기재합니다.

⑦ 존속기가라

임차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기재합니다.

⑧ 등기의무자라

임차권설정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 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, 등기명의인표시변경(또는 경정)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⑨ 등기권리자란

임차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(II)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란

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,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① 세액합계란



취득세(등록면허세)액, 지방교육세액,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⑫ 등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15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①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 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라

- ②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합니다.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- ①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(4)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⑤ 신청인등란

- ⑦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,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, 법인이 등기의무자인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(관리인)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서명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

< 신청인 >

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② 임차권설정계약서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.

③ 등기필증

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.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 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 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 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 다.

④ 도면

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. 도면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,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(예: [등록문서번호: 100번])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. 단,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서명을 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소유자의 인감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하거나,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『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



할 수 있습니다.

③ 주민등록표등(초)본

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<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 기 타 >

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393호』 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 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·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주민등록표등(초)본, 도면, 임차권설정계약서, 등기필증 등 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